

<제2세션>

**후속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 **진행** : 김문중 (언론중재위원회 연속교육팀, 변호사)
- **패널** : 조인혜, 이승희, 한혜준, 남지현, 김민지, 정우현, 송동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 조사관)
김주연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변호사)

제2세션 후속보도의 조정성립에 관한 법적 쟁점

<토론 개요>

제2세션 토론은 2013서울조정 825·826 사건을 사례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본 사례는 한 모바일 초청장 어플을 제공하는 회사가 TVN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조정대상물은 2013년 6월 1일자 SNL코리아 프로그램의 <신종 사기 “스미싱” 기승 모바일 초청장 링크 위장> 제하의 보도이다.

TVN은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을 소개하면서 한 모바일 초청장 어플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진은 신청인 회사의 어플 사진이었고, 신청인 회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 측은 신청인 회사에 대해 별도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양측이 후속보도의 형태로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 조정성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 취하 종결과 조정성립 중 바람직한 종결 형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쟁 점 1 : 후속보도의 조정성립 가부

조 인 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속보도는 언론중재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피해구제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조정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보도는 조정성립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후속보도의 형태로 조정 조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보도 형태의 조정합의는 집행력, 기판력 등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의 방법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후속보도는 언론중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구제 방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후속보도는 조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합의 방식이다.

언론중재법 제23조⁴⁾ 제1호에 따르면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합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최소한의 충족 요건 등이 규정되어 전혀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다면 합의의 내용과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중요시된다. 따라서 조정 절차에서 후속보도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정당하다. 따라서 PR보도,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의 후속보도로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23조⁵⁾에 의하면,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보도의 형태로 조정이 성립될 시, 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⁶⁾에 의하여 기판력, 집행력 등을 갖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5) supra note 1

6)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쟁 점 2 : 취하종결과 조정성립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 승 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신청 취하로서 조정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이 종료되어 양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상관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킬 경우,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이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주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성립의 경우, 후속보도의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후속보도는 PR보도나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언론피해구제방법과 달리 합의문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문구를 확정하는 데 수차례의 심리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문이 작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실무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분쟁해결의 완성도에 치중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신속성이 강조되는 언론분쟁의 경우,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 보다,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키면 양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촉을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을 합의하여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기일이 소요될지라도 당사자가 서로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보다 효과적인 후속보도로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것이다

한 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론보도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정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신청인의 입장이 서로 불균형한 경우 상대적 약자인 신청인이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시, 조정과정에서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보도의 파급력이 큰 언론분쟁은 피해를 구제를 함에 있어 신속성은 분쟁해결의 핵심 사안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등 의하여 보도내용이 대중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재생산되고 진실여부와는 상관없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⁷⁾”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언론분쟁해결의 최우선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신속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정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기보다 취하로 사건을 종결한 후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다.

취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중재부의 역할이 차단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이 취하가 될 때는 합의 내용이 대부분 완성될 수도 있으나, 대략적인 합의만을 한 후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로 하고 취하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의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⁸⁾ 등의 사

7) 헌법재판소 2013.6.27. 2012헌바37결정

8)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균형한 경우에 분쟁해결절차로서 화해나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은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원고가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판결로 가는 이유는 원고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라기보다는 “피고보다”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송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예측을 하는 경우 원고기대이익이 항상 피

유로 불평등한 입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언론사에 비하여 신청인이 불리한 입장일 때가 많다. 조정과정에서는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불균형을 고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조정을 취하한다면 중재부의 이러한 기능은 발휘될 수 없다.

물론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을지라도 조정조서에 대략적인 문구만 명시된 경우라면 이행의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정조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언론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양 당사자가 다시 다투게 된다면 이 역시 중재부의 역할이 차단되는 영역⁹⁾의 문제일 수 있다.

한편 조정은 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시되므로 조정자인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재부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함으로써, 이해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고기대손실과 일치하므로 항상 화해를 할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화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비슷한 정보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이 된다.(민사소송의 법경제학, 송옥렬, 서울대학교법학, 2005.6. 145-146쪽) 따라서 조정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설혹 조정성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 당사자가 정보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9) 이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절차나 언론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신청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합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시점을 의미한다.

남 지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하 후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사적합의에 대한 이행은 언론사의 임의에 달려있으므로 신청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상,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은 조정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기한이 도과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경우라도 민법 제751조, 제764조에 의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취하 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라 함은 언론사의 보도약속을 근거로 조정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 간 사적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합의 내용의 이행담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언론사가 추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보도를 할 것을 합의를 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취하였으나 언론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언론중재법 상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정조서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민사소송법 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당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되므로 언론사의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사적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취하 후 합의 종결의 경우는 조정절차에서와 같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의 임의 이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결국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것인지 혹은 그에 더욱 앞서 이행 자체를 할 것인지 여부는 언론사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의 피해자인 신청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되고, 피해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합의 내용 이행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다시 그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비롯하여 언론중재법 전체를 살펴봐도 조정의 재신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취하를 한 이후라도 얼마든지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절차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지 3개월, 보도된 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재조정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합의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해본다면 이 청구기간은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임의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위 청구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의 경우 위와 같은 단기의 청구기간을 악용하여 합의 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언론사의 이행이 없고 언론조정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 신청인은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언론중재법을 이용한 피해구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정절차 등 언론중재법을 이용한 구제방법 외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진 경우 일반법인 민법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의 보도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행위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

법 제750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지만 민법은 나아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1조 제1항),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항). 따라서 어떠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위 규정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4조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상 조정절차 청구신청기간이 도과한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금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형적인 방식인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 청구 외에도 기사 삭제나 장래 침해행위 금지 청구 등과 같은 여타의 다양한 구제도 가능할 것이다.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중재부는 언론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반면, 민법의 명예훼손 특칙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의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게 있으나 만일 언론사가 이를 입증한다면 신청인은 언론보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다. 즉, 언론조정절차를 통한 실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신청인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보다 어렵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민법 제764조¹⁰⁾ 명예훼손의 특칙에 근거하여 법원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둘째, 가해행위가 있을 것, 셋째, 손해가 발생할 것 넷째,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¹¹⁾ 및 제16조 제2항¹²⁾에 의거해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구제가 입증책임 측면에서 더 용이할 수 있다.

10)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1)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2)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추정되고 언론사에게 추정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게 된다. 대법원은 공공성, 진실성, 진실임을 믿은 상당성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¹³⁾ 이래, '현실적 악의의 원칙'에 의하여 언론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시 피해자가 위법성에 대한 실질적 입증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성 요건이 새로운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언론사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언론조정신청을 통한 정정,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실익이 있다. 민사상 청구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언론사에게 있다고 하나, 언론사가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게 되면 신청인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민사소송 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13)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정 우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재신청, 민사소송제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이 조정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곧바로 합의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조서의 합의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 효과적인 합의이행, 강제집행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언론사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면 언론중재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조정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합의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조서의 합의 문안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합의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피신청인은 모월 모일 신청인과 관련하여 별도보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경우, 이 문안만으로는 ‘별도보도’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피신청인인 언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를 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편, 위와 같이 합의문안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별도보도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사는 이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만족스러운 보도가 아니므로 이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이행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조정조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와 같은 방법이 있다. 우선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이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집행방법이고, 대체집행¹⁴⁾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그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로

14)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하여금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간접강제¹⁵⁾는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언론분쟁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의 방법은 간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인 언론사만이 가능하므로 집행기관이 직접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직접강제와 채권자가 제3자가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대체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속보도처럼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간접강제의 방식으로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런데 후속보도의 합의문안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다면 간접강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식적으로는 집행문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정조서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구체적인 합의문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행담보 조항, 부제소 합의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합의이행 강제하고 추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즉, 조정조서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조정성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협상을 통하여 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으로 당사자 간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해결방법이다.¹⁶⁾ 언론분쟁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도 합의에 대한 결정권한은 당사자만이 지니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작성하게 된다.¹⁷⁾

조정조서 작성 시, 합의내용이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 이외에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조항들을 첨부할 수 있다. 예컨대 이행 담보 조항을 조정조서에 삽입하여 언론보도의 피해자인 신청인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이행담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추가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이행 담보 조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의 조정조서의 경우에도 '언제까지 피청구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00%의 금원을 지급한다.' 는 지연손해금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행담보조항은 사후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언론사측의 합의내용 이행을 담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

16) 김용주, "言論中裁委員會의 紛爭調停機能에 대한 法的 考察",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학위논문(박사), 2007. 8.

17) 김용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한국언론법학회, Vol. 10. No. 2, 2011.

해서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후속보도를 최대한 빨리 보도하게 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 하여 보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조정조서가 작성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조정성립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조정을 취하하는 것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해나가는 것이 조정의 기본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행 담보금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이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과 달리 조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인데, 위와 같은 강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조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물론 양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이해관계 조절이 조정의 기본 원리이나, 조정의 목적은 '이해관계 조절'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에 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행 담보금 조항 역시 합의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기능하는 것이므로 조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부제소합의는 소송 상 합의 즉, 강학 상 '소송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근대사회 법 원리로 당사자의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그 합의의 사적효력을 부인할 여지는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현재 혹은 장래 계속될 특성의 소송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 사인 간 합의에 곧바로 소송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⁸⁾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이미

18) 사적계약설과 소송계약설의 견해 대립.

존재한다면 민사법원은 소의 이익 흠결로 인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함에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¹⁹⁾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의 작성 시 부제소 특약을 더한다면 이는 해당 보도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효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쟁의 종국적 종결이라는 조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하여 이행담보조항이 신청인에게 장점으로 작용한다면 부제소 특약은 반대로 언론사에게 이점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신청인과 약정대로 후속보도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2차적 분쟁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분쟁은 언론사입장에서도 소모적 분쟁이며 심각한 경우 보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는 분쟁의 종결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장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언론분쟁으로 인한 언론사의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언론보도를 가능케 하여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적으로 언론사보다 약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구제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제소합의 조항이 당사자 간 현실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제소 특약은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소송을 통한 구제를 막아 일방 당사자의 의사대로 자의적인 합의의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경우 타방 당사자의 헌법 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제소합의를 넣기 전 합의내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실조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피해구제를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법률 및 언론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19) 이정환, "소송계약", 『圓光法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Vol.27 No.2 (2011), 20-21면.

보 론 : 쟁점에 대한 실무적 입장에서의 검토

최 은 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5중재부 조사관)

조정성립,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외에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후속보도 약속을 하고 취하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합의 후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간접강제절차를 따를 수도 있다. 효과적인 후속보도를 위해 구체적인 합의의 문안이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후속보도 약속 등으로 취하가 되어 피해구제가 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전체 피해구제된 건수 1473건 중 88건으로 6%에 이르고, 2012년 1678건 중 82건으로 4.9%, 2013년 현재, 1511건 중 163건으로 10.8%에 이른다. 이렇듯 조정성립,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후속보도 약속을 하여 취하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신청인이 취하 후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관련법상 재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조정신청기간의 한계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

조정성립 이후 합의사항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문의가 많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지면을 다르게 게재하거나, 위치를 다르게 게재하거나, 정정·반론보도문조차도 조사나 어미 등을 수정하고 내용을 축약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 심지어 정정보도문 주위로 정정보도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뉘앙스의 반박 기사를 크게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양해를 구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조정성립 이후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실제 처리한 사례 중, 후속보도할 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기사내용을 합의하고 추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게재되어 분쟁이 원만히 종결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후속보도는 보도의 공익적인 취지도 달성하면서 신청인의 피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도 하다.

김 주 연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변호사)

조정 당사자 간에 후속보도의 형태로 보도하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취하된 경우에 만일 추후에 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지위는 불안해진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후속보도 약속을 이유로 취하하는 것보다는 조정합의서에 후속보도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정성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결의 신속성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조정을 보면 중재부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중재의 경우 신청인은 조정이 처음인 경우가 많고 법률상 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재부는 이들이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에서 계약서 문안을 작성할 때도 법률가의 도움이 없으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쉽고,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데, 조정을 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의에서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실무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예컨대 제목 및 본문의 활자 크기, 분량, 원 기사에도 후속보도를 '이 기사의 관련기사'로 표시하는 방법, 방송이라면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언론중재법상의 구제는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 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알았을 때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 전파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언론사 측에 고의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때도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취하 후의 후속이행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정정/반론보도청구의 형태가 아니라 이 사안처럼 후속보도를 청구하는 소송 형태가 실제로 가능·인용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정 성립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당사자의 대략적인 합의 사항을 심리 조서에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조정 당사자에게 조정/취하 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고지해주는 일이다. 취하 후 이행에는 기간 도과, 입증 책임, 소송 수행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청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이에 대한 안내는 필요한 부분이다.